

환경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2023년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추가되는 시멘트제조업과 관련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의 측정·조사기준, 최대배출기준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오염물질 농도 기준 추가(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정수질 유해물질 농도기준을 반영함

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별표 12), 오염물질의 측정·조사 기준(별표 13), 최대배출기준(별표 15) 추가

시멘트제조업이 통합관리 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 기준,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물질명	농도기준(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안티몬	0.02
그 밖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정량한계값

별표 12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분쇄기 등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출입구를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 소음의 외부 유출 및 비산먼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2) 누출이나, 누수로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은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불투수성 시설이나, 내부 배수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주기적으로 부지 경계지점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별표 1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1호가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최대배출기준 (표준산소농도)
먼지 (mg/Sm ³)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13)
질소산화물 (ppm)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13)
염화수소 (ppm)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6(13)
납화합물 (mg/Sm ³)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4(13)
벤젠 (ppm)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
페놀화합물 (ppm)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
포름알데히드 (ppm)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